공포번호(규정번호): 3191(3-1-34)

연구윤리 규정

제정 2023. 9.12.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이 규정은 한림대학교(이하 '이 대학교'라 한다)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적용 대상) 이 규정은 이 대학교 소속 교원, 연구원, 대학원생 및 기타 이 대학교 내 연구 활동과 직·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(이하 '연구자'라 한다)에게 적용한다.

제 3 조 (다른 규정과의 관계) 연구윤리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.

제 2 장 연구의 진실성 보호 및 관리

제 4 조 (원칙) ①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연구 내용과 그 중요성에 관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하고, 연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추가하지 말아야 한다.

③ 연구자는 모든 연구개발 활동이 편견과 예단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연구결과 발표 이후 연구윤리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.

⑤ 대학은 연구자가 연구수행에서 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.

제 5 조 (연구자료의 기록 및 연구결과의 도출) ① 연구자는 정확하고 검증된 연구자료(실험의 재료·과정·결과, 관찰·현장조사·설문조사 결과 등 원자료인 연구데이터와 이를 처리한 2차 자료)에 의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진실에 부합하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연구자료는 정확히 보고되어야 하고 해석 및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고 정확하게 기록, 처리 및 보존되어야 한다.

③ 연구자는 적절한 실험설계와 통계기법을 사용하고, 필요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대학은 연구자료, 연구노트 등의 소유, 관리 등의 책임, 보존, 폐기, 보안 및 공개 등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.

제 6 조 (연구성과의 사용) ① 연구자는 연구계획서, 연구문헌 등을 작성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,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, 연구데이터, 연구저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를 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자는 이미 게재·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 및 인용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·출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7 조 (연구결과 활용)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공표하고 활용할 때 자신의 학문적 양심에 부합하도록 해야하고, 외부의 평판 제고나 연구비 확보 등을 위해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.

제 3 장 학문교류

제 8 조 (학문교류의 정의) 학문교류는 연구자 개인, 연구기관, 학술단체의 학문적, 과학적, 기술적 발전을 위해 다른 연구자, 연구기관, 학술단체, 일반인과 연구의 최종 소비자 등과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.

제 9 조 (학문교류의 범위) 학문교류는 학술대회 발표와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논문 투고 및 게재, 책의 출판 등을 포함한 학술 활동과 매체나 방식과 상관없이 연구자, 연구기관, 단체 등이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.

제 10 조 (연구결과 발표의 책임) ① 연구자는 연구결과의 발표와 관련하여 연구진실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연구를 발표하기 전 연구가 사회에 미칠 영향과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.

③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, 이를 소속기관에 알리고 기관의 심의 절차를 걸쳐 연구결과의 발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.

제 11 조 (연구자의 건전한 학술활동) 연구자는 연구 성과물의 가치 보호 및 윤리적 학술교류를 위해 우수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고 부실학회 등에 참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 4 장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

제 12 조 (이해충돌의 내용) 이해충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.

1. 금전적 이해상충 :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
2.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: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,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
3. 지적인 이해상충 :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
4.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: 교육, 봉사,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 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
5. 기타의 이해상충 :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

제 13 조 (이해충돌의 관리 및 보고)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,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,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,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.

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·대학·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를 이 대학교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.

④ 연구자는 미성년자(만 19세 이하) 또는 가족(배우자, 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) 등 특수관계인과 연구를 수행할 경우에는 연구 수행 전 또는 공저 논문의 발표나 투고 전에 이를 이 대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 5 장 연구대상의 보호

제 14 조 (인간대상 연구의 윤리) ① 연구자가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연구대상자의 권리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연구승인에 대하여는 이 대학교 '생명윤리위원회 규정'을 따른다.

제 15 조 (실험동물대상 연구의 윤리) ① 연구자가 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의 과학적·윤리적 이용을 확보하고, 불필요한 동물이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 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연구승인에 대하여는 이 대학교 ‘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’을 따른다.

제 6 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

제 16 조 (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정의) 건전한 연구실 문화란 연구실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분위기에서 개방형 소통으로 활기가 있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문화를 의미한다.

제 17 조 (연구자의 권익보호)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, 권익보호,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,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정당하게 대우해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, 나이, 종교, 출신 지역, 성적 취향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.

제 18 조 (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) ①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사이에는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신뢰 조성이 필요하며, 연구책임자는 수직적 관계 대신 수평적 관계중심의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.

② 연구자는 연구의 기회, 연구 수행 과정에서 공간과 시설, 도구를 이용할 기회를 공정하게 가질 수 있어야 한다.

③ 연구자는 과도한 참여를 강요받지 않고 부당한 일을 거부할 수 있으며 연구비 등과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.

제 7 장 연구윤리 교육

제 19 조 (연구윤리 교육) ① 대학은 소속 연구자 및 관련 직무 담당자 등의 연구윤리 의식 함양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대학은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연구윤리 강사진의 확보, 연구윤리 교육자료의 개발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 20 조 (연구자의 책무) ① 연구자는 이 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연구자는 대학에서 제공하는 연구윤리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고,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원 및 학생으로 하여금 이에 참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제 21 조 (연구윤리 교육의 내용) 연구윤리 교육은 이 규정을 바탕으로 하되, 전공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고, 구체적 사례와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 8 장 부정행위 관리

제 22 조 (연구부정행위의 검증) ① 연구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(이하 ‘법’이라 한다)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·변조·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.

② 제1항의 연구부정행위의 검증·조치에 대한 사항은 이 대학교 “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”에 따른다.

제 23 조 (일반부정행위의 검증) ① 일반부정행위란 법 제31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.

1.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
2. 법 제1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
3.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

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

4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

5.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② 제1항의 일반부정행위의 검증·조치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제정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